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196

발의연월일: 2020. 7. 20.

발 의 자:김예지·박덕흠·강기윤

조태용・최승재・구자근

추경호 · 이명수 · 이종성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담이 지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연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그 해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도한 조세징수비 용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

2조).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그 세액"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期分)의 세액"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1호 중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를 "제11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1. 4를"을 "1만분의 7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분"을 "해당 기분"으로, "1천분의 2.3을"을 "1천분의 1.15를"로 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

| 기분 | 과세기준일 |
|------|-----------|
| 제1기분 | 매년 6월 1일 |
| 제2기분 | 매년 12월 1일 |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

| 기분 | 납기 |
|------|-------------------------|
| 제1기분 | 해당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제2기분 | 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전 연도"를 "직전 기분"으로,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직전 연도"를 각각 "직전 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전연도"를 "직전 기분"으로 한다.

제128조제5항 중 "기분(期分)"을 "기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 15조 및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 부담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 기분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기초로 계산한 세 부담 상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 | 제111조(세율) ① |
|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 |
|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
|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
| | 액을 그 기분(期分)의 세액 |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
|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 | |
| 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 | |
| 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 | |
| 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 | |
| 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 | |
| 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 | |
| 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 |
|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 |
|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 |

수 있다.

-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 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 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 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 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 다.
-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 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 <u>.</u> |
|---------------------|
|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
| |
| |
| 2 |
| <u>1만분의 7을</u> |
| |
| ② <u>해당</u> |
| 기분 |
| <u>1천</u> |
| 분의 1.15를 |
| |
| ③ (현행과 같음) |
|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 |
| 세기준일은 다음 표의 구분과 |
| <u>같다.</u> |

| <u>기분</u> | <u>과세기준일</u> |
|-----------|-----------------|
| 제1기분 | <u>매년 6월 1일</u> |
| 제2기분 | 매년 12월 1일 |

는 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

| <u>기분</u> | <u>납기</u> |
|-------------|----------------------|
| 제1기분 | <u>해당 연도 7월 16일부</u> |
| <u> </u> | <u>터 7월 31일까지</u> |
| 케이크) 범 | 다음 연도 1월 16일부 |
| <u>제2기분</u> | 터 1월 31일까지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 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 다.

-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

② (생략)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 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u>직전</u>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u>해당</u>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 ② (현행과 같음) |
|-----------------|
|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 |
| |
| |
| |
| 직전 |
| 기분 |
| |
| |
| <u>해당 기</u> |
| <u>분</u> |
| |

| 호에 | 의한 | 금액을 | 해당 | <u>연도</u> 에 |
|-----|------|-------|-----|-------------|
| 징수학 | 할 세약 | 백으로 : | 한다. |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 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 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 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u>직전</u> 연 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 <u>해당 기분</u> - |
|----------------|
| |
| 1 |
| |
| |
| |
| |
| |
| |
| <u>직전 기</u> |
| <u>년</u> |
| |
| |
| |
| 2 |
| |
| |
| |
| |
| |
| <u>직전 기분</u> |
| |
| |
| |
| |
| 3 |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u>직전연</u>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 ④ (현행과 같음)
-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u>기분</u> (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 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 고납부할 수 있다.

| 기분 |
|--------------------------------------|
| |
| |
| |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
| |
| ④ (현행과 같음)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⑤ |
| ⑤ |
| ⑤ —————————————————————————————————— |
| ⑤ —————————————————————————————————— |
| ⑤ —————————————————————————————————— |
| ⑤ —————————————————————————————————— |